

- 의약품 허가사항범위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관련 질의회신
- 심사기준(지침) 개선 항목 공개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병원운영 관계자들은 의료관계 법률과 제도를 적용 하거나 해석하는데 있어 종종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본 란은 병원경영에 있어 궁금한 점이나, 의료제도 ·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대한병원협회지 Q&A로 연락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jyk@kha.or.kr

의약품 허가사항범위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관련 질의회신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급여65720-1788(2002.12.18)]

- Q.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이 고시된 의약품중 허가사항(효능 · 효과등)이 추가, 변경된 경우와 관련하여 급여범위 및 시점
- A. 별도 정해져 있는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는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고시된 품목의 효능 · 효과 등이 추가 · 변경된 경우, 해당제약업소 또는 의약단체 등에서 추가된 적응증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조정 신청에 의거 고시가 변경되기전까지는 의약품허가사항 변경 일로부터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적용함.

심사기준(지침) 개선 항목 공개

심사기준 및 지침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심사기준 마련을 위하여 각 의약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유형별 분류 · 검토후 관련전문위원회(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

준조정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기준(지침) 개선안을 분기별로 공개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검토된 한방분야의 심사기준 개선안에 대해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과 붙임과 같이 총 5항목(변경4, 폐기1)이 개선되었습니다.

◎ 변경

연번	제 목	변 경 전	변 경 후
1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p><소아에게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인정여부></p> <p>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는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p>	<p>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는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검사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p>
2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안와내침술, 복강내침술 인정여부	<p><소아에게 안와내침술, 복강내침술 인정여부>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안와내침술, 복강내침술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시술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p>	<p>3세이하의 영·유아에게 안와내침술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시술은 아니나 구안와사 상병에는 그 시술이 불가피하므로 인정하며, 또한 복강내침술은 복통, 위완통, 괄란, 전광 상병에 한하여 인정한다.</p>
3	침술3종 시술시 인정기준	<p><일률적인 침술 3종 산정시 심사방법>침술3종 시술은 복합적인 상병에 대하여 시술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복합상병의 범주는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나 응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 J와 H코드는 동일계열상병으로 인정하며 단일상병이라 하더라도 침술3종 시술에 대한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한다.</p>	<p>침술3종 시술은 복합적인 상병에 대하여 시술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응급의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다만, 복합 상병의 범주는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p>

연 번	제 목	변 경 전	변 경 후
4	<p>하40(변증기술료) 산정시 진료 기록부상 변증(辨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p>	<p>변증은 증후(證候)를 정확히 인식하여 證과 證사이의 관계 및 증후와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으로써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으며 증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증(主症)이나 차증(次症), 설진(舌診), 맥진(脈診)과 그의 임상과정상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증상들인 변증지표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음 - 가. 치료 및 처치, 투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주된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있는 경우나. 수기 맥진에 의한 맥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 또는 설(舌) 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다. 삼초변증(三焦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라. 기혈음양진액변증(氣血陰陽津液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마. 장부변증(臟腑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바. 상한변증(傷寒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사. 사상변증(四象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아.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의한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p>	<p>자.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p>

◎ 폐기

연번	제 목	변 경 전	변 경 후
1	주통, 상지부염좌, 근강직 상병에 투여된 '청폐사간탕'의 인정여부 '청폐사간탕'은 태음인에게 많이 쓰이는 처방중의 하나이나 진료기록부상	'청폐사간탕'의 주치·효능에 속하는 증상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임의 처방 투여시에도 처방별 주치·효능에 포함된 증상이 2가지 이상 일치될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	청폐사간탕은 비급여 약제로 지침의 의미 없어 폐기